##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2-2023-7552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 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3.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 4. 결핵 전문위원회
- 5.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 6.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 7.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0조(공공기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1.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전화번호·직업·감염병명·발병일 및 진단일
-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주소지·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 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역학조 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

- 히 필요한 경우
-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역 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역학조사반을 둔다.

-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군·구역학조사반은 각 각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 본부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 ④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다. 시·도역학조사반 및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훈련
-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 마.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바. 시·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 2. 시·도 역학조사반
-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마. 시·군·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 3. 시·군·구 역학조사반
-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시·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③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 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 및 소속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② 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③ 피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 2. 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하는 피해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⑤ 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
-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른 전통시장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 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60 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한다.

- ② 방역관은 그 소속 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4조제2항 제1호부터 제7호(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방역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방역관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에 배치하되,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에도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한다.

-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 3.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4.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역학조사 계획 수립
- 2.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 3.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 4. 역학조사 기술지도

- 5. 역학조사 교육훈련
- 6.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 ③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에 배치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에도 배치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군·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제28조(손실보상의 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법 제37조의 경우: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든 비용
- 2. 법 제49조제1항제13호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에 든 비용
-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건물의 소유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사실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 급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나.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 다.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 라.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마.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 바.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 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 3.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에 관한 업무
- 4.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업무
- 5.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업무
- 7. 법 제22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업무
- 8. 법 제23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 9.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요청에 관한 업무
- 10.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의 보고에 관한 업무
- 11. 법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에 관한 업무
- 12. 법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지원 및 비용 지급에 관한업무
- 13. 법 제37조에 따른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
-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계
- 약, 생산지시, 역학조사 등에 관한 업무
- 15. 법 제41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 16. 법 제42조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관한 업무

- 17. 법 제43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관한 업무
- 18.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관한 업무
- 19. 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 20.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업무

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 [별표 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제83조	50만원	100만원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항제1호	50건편	100인전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법 제83조	50만원	100만원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50인전	100인전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	법 제83조	25만원	50만원
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40인전	500년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법 제83조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15만원	30만원
기록한 경우	제1항제4호		

-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대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 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